# 2023년도 국 정 감 사 계 획 서

2023. 9. 6.

국 방 위 원 회

##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 대상기관	2
4.	감사반의 편성	3
5.	감사일정	5
6.	주요 감사사항	6
7.	감사 방법	6
8.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9
9.	소요 경비	9

##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 1. 감사의 목적

□ 「헌법」제61조, 「국회법」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국정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입법활동, 정책심의,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감사기간

□ 2023. 10. 10.(화) ~ 10. 27.(금) [18일간]

## 3. 감사 대상기관

구 분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4)		<u>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u>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소속기관 등 (32)	직할부대 및 기관(25)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국군복지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출판지원단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대학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국방정신전력원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드론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사스키리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건	정보원 국방홍보원
위원회		소속기관 등(7)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지뢰피해자지원단
선정 대상기관		8(1)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6.25 비정규군보상지원단
(66)	합참·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5)		<u>합동참모본부</u> 육군본부 해군본부	<u>공군본부</u> 해병대사령부
	각 군 예하부대 및 소속기관 (20)	육군(11)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군수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인사사령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육군학생군사학교	
		해군(4)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공군(4)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사관학교
		해병대(1)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공공기관	국방부 산하(3)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5)	방위사업청 산하(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포함)
본호	회의 승인대상기	관(1)	군인공제회	
	계		6	7개

#### ※ 현장점검 계획

일 자	ı	현장점검 기관/부대	장 소	
10.17(화)	오전	KAI	진주	
10.19.(목)		해군7전단, 해병대 9여단 등	제주	
10.20.(금)		특전사훈련장, 마라도	<b>/∥</b>	
10.26 (日)		드론작전사령부	ᅲᅯ	
10.26.(목)		5군단	포천	

## 4. 감사반의 편성

- □ 국방위원회 위원 전원(17인)으로 단일 감사반 편성
- □ 감사반

구 분	교섭단체	위원명	비고
감사반장	국민의힘	한 기 호	위원장
		김 병 주 기 동 민	간 사
		설 훈	
		송 갑 석	
	더불어민주당 위원 국민의힘	송 옥 주	
		안 규 백	
		윤 후 덕	
71.11.01.01		이 재 명	
감사위원		정 성 호	
		신 원 식	간 사
		성 일 종	
		윤 재 옥	
		이 채 익	
		이 헌 승	
		임 병 헌	
	비교섭(정의당)	배 진 교	

### □ 사무보조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수석전문위원	김 병 주	
	전 문 위 원	천 우 정	
	행 정 실 장	김 건 식	
	입 법 조 사 관	이 경 주	
	"	김 진 선	
	"	정 재 호	
국방위원회	"	신 세 민	
	"	조 정 일	
	"	황 태 율	
	행정관	이 정 규	
	주무관	김 윤 진	
	"	강 량 인	
	"	임 선 진	
국회사무처	속 기 주 무 관	4 ~ 5 인	
		1 인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 드 1 인	국민의힘
위 원 실	 보좌직원	위원실당 1인	

## 5. 감사일정

일	시	대상 기관	-	동시수감기관	장 소	비고
10. 10(화)	10:00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망부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국군시호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당출판지원단 국군자정관리단 국당부군시론제검증단 국방부군시편찬연구소 6.25 비정규군보상지원[	국방대학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국방정신전력원 국방정신전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전사정보원 국항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뢰피해자지원단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군인공제회	국방부 (용산)	
10.11(수)				시프하니		
10. 12(목)	10:00	합동참모본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국군심리전단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10.13(금)	10:00	5·18민주화운성 병무청	<b>장 진상규명조사위원회</b> 대체역 심사위원회		국회 (동시수감)	
10.14~15		010	-11.11   11.11   11.24	휴 일	,	
10.16(월)	10:00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11 2	국회	
	오전	《현장점검》	KAI			
10.17(화)	오후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전흥연구소			진주	
10.18(수)				자료정리	T	
10.19(목)		《현장점검》	해군7전단, 해병대9여단	단 등	 제주	   1박
10.20(금)		《현장점검》	특전사훈련장, 마라도		\\ \( \) \\ \\ \\ \\ \\ \\ \\ \\ \\ \\ \\ \\	_ ' '
10.21~22			07-04-4	휴 일		
10.23(월)	10:00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군수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인사사령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육군학생군사학교	계룡대	4 DII
	15:00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계룡)	1박
10.24(화)	10:00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10.25(수)						
10.26(목)	10:00	《현장점검》	드론작전사령부		 - 포천	
10.20(¬)	10.00	《현장점검》	5군단			
10.27(금)	10:00   <b>전체 수감기관</b>   국회   종합 감사			종합 감사		

<sup>※</sup> 감사일시, 감사장소 등 세부 감사계획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6. 주요 감사사항

- 가. 주요정책 및 업무 추진 관련 사항
- 나. 예산집행 현황 및 차년도 예산안심사 관련 사항
- 다.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라. 기관 및 부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7. 감사 방법

#### 가. 감사진행 원칙

- 국정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현안보고 청취 및 정책질의, 서류제출요구, 증인 등 출석요구, 현지시찰 등의 방법 으로 실시함.
-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함.
- 위원당 질의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되, 수감기관 및 감사일정에 따라 위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질의 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됨.
-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할 수 있음.
- 그 밖에 감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함.

#### 나. 보고 및 서류 등 제출 요구

- (1) 보고 요구
  - 위원회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상기 주요 감사사항이 포함된 업무현황 전반에 대해 보고토록 함.
  -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위 사항이 포함된 보고자료를 감사위원 및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에게 사전 배부하여야 함.

#### (2) 서류 등 제출 요구

- 위원회 의결에 의한 요구(원칙)
- 감사위원은 서류제출 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의 위원회 의결 전날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 의결 후 각 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함.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 위원회 의결 이후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음.

#### 다. 증인·참고인·감정인 출석요구

- 국정감사 대상기관 소속 기관증인은 기관장(부대장)과 관계부서장 중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요구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정감사 대상기관 소속 직원 중 관계부서장
  이외의 자를 기관증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음.

(7	관증인	σď	」	١১
\/	1777	વ્ય	^ \	/

구 분	기관증인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관장, 국장급 이상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의장, 부장·실장급 이상
육·해·공군본부	참모총장, 참모부장·실장급 이상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 처장급 이상
동시수감기관(부대)	기관장 또는 부대장

- 기관증인 출석요구 의결 이후 감사 대상기관에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자의 직위에 새로 부임한 자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것으로 간주하며, 감사 당일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에는
  부서 내 차상위 직급자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것으로 간주함.
- 종합감사에 출석하는 기관증인은 주요 수감기관 및 부대의 기관장· 부대장·주요간부 중 위원회 의결로 정함.
- 일반증인 및 참고인·감정인에 대해서는 간사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요구를 함.

-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출석요구 철회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하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함.
- 국정감사 대상기관 소속 직원을 원 소속 기관이 아닌 타 기관의 감사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경우, 일반증인의 출석요구 방식에 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함.

#### 라. 증인 선서

- 증인은 증언에 앞서 선서를 하여야 함.
- 증인이 다수인 경우,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설명함.

#### 마. 감사 순서

- ① 감사선언(위원장)
- ② 위원장 인사
- ③ 증인 선서
- ④ 기관장 인사 및 주요간부 소개
- ⑤ 업무현황보고 청취
- ⑥ 질의 및 답변(증인 등 신문 및 증언)
- ⑦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 바. 국정감사계획서 변경 위임

 계획서 채택 이후 필요시 위원장은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의 일정, 장소, 수감기관, 증인·참고인의 출석 관련 사항 등 국정 감사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8.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기간·대상기관·실시경과 등일반사항과 감사 주요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등을 포함함.
- □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채택함.
-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함. 〈2023.7.11. 국감조법 개정〉

#### 9. 소요경비

□ 출장여비, 증인·참고인 출석여비 등 제반 소요경비는 국회사무처의 집행기준에 따름.